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밸류웨이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참조 조항 오기 정정	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(생략) 2. 제17조제2항의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 내에서 10%를 초과할 수 있다.	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제15조제2항의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 내에서 10%를 초과할 수 있다.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10. (생략) ③ ~ ⑩ (생략)	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</u> 사유를 포함한다) 10. (현행과 같음) ③ ~ ⑩ (현행과 같음)
	<신설>	<u>부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8

		<u>월 11일부터 시행한다.</u>
--	--	----------------------